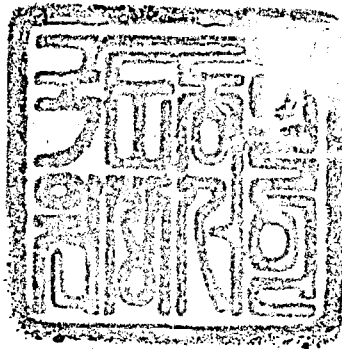


北韓形法の形成과 展開에 관한 考察

1989



研究責任者：한 인 섭 (경원대)

國 土 統 一 院

冊을 내면서

이 報告書는 國土統一院「統一 및 北韓問題 新進學者 育成事業」의 一環으로 推進된 研究結果 報告書입니다.

本 研究는 社會主義 法理論과 關聯하여 北韓刑法 形成過程 및 制定, 改正 등을 각각 發展段階에 비추어 特性을 分析하였습니다.

이 冊子가 關聯研究 및 政策樹立時 참고 자료로 적극 活用되어지기를 期待하면서, 아울러 여기에 收錄된 내용은 반드시 當院의 見解와 一致하는 것이 아님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1989. 12.

調 查 研 究 室

目 次

1. 글머리에	3
2. 研究傾向과 方法上的 問題	6
3. 植民地法制的 清算과 初期의 法的 實踐	9
4. 社會主義로의 過渡期段階의 法的 實踐	17
5. 社會主義의 確立과 1974年 刑法典의 制定	30
6. 맺음말	40
參考資料	43

1. 글머리에

우리시대의 가장 큰 課題를 民主化와 民族統一이라 할 때 統一의 한 相對方인 北韓에 대한 이해는 어느 領域보다 重要하고 先行되어야 할 研究分野의 하나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애초에 美蘇의 軍事的 分割점령으로부터 시작된 韓半島의 分斷은 각기 獨立國家를 樹立하고, 未曾有의 大戰爭을 거치면서, 한쪽은 外勢에 깊이 依存하는 資本主義體制로의 發展을, 다른 한쪽은 閉鎖인 社會主義體制로의 발전을 겪어왔다. 이러한 獨自的인 展開樣相은 그러나 相互 긴밀한 영향하에 進行되었음은 누구도 否認할 수 없을 것이다. 南北韓 政權은 相對方的 排除와 타도를 專制로 한 體制發展을 指向해 왔으며, 相對方에 대한 優位를 占하기 위한 競爭的 노력을 기울여왔다. 또한 相對方을 絶對惡으로 묘사하고 이를 國民들에게 注入시킴으로써 政權維持의 편의를 도모해왔던 側面도 무시할 수 없다. 요컨대 分斷矛盾은 南北韓간에서 뿐 아니라, 南韓 内部 혹은 北韓 内部의 階級間, 集團間, 個個人間的 分裂과 敵對感을 深化시키는 중요한 기제로 작용해 왔던 것이다. 이리하여 領土上의 38선은 곧 民族構成員 전체의 마음속에 깊이 印刻되기에 이르렀다. 獨逸國民들이 冷戰의 象徴, 分斷의 象徴이었던 베를린 障壁을 헐고 感激的인 交流를 해내는 그 시점에 우리의 代表들은 判문점에서 相互不信과 疑心 속에 쓸모없는 言爭에 귀한 시간을 虛費하고 있는 慘擔한 모습을 연출해내고 있다. 不信의 장막이 여전히 두텁게 깔려있는 상황을 조금이라도 打開하기 위한 최소한의 前提는 南北韓의 立場과 高충에 대한 보다 깊이있는 안목을 지니는 것이다. 그러기에 아직도 두터운 금기속에 가려져 있는 北韓에 대한 이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것이 없다.

北韓法도 北韓바로알기 運動의 중요한 한 항목이 됨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그 중에서도 특히 北韓刑法의 分野는 北韓에 대한 일련의 나쁜 인상—가령 아오지 炭鑛이나 人民裁判의 이미지에서 볼 수 있듯이—을 강화시키는 데 기여해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合理的 利害가 不可缺한 것이다.

여기서 유의할 것은 刑法法制 全般의 실상을 北韓의 내재적인 논리에 입각하여 한번 이해해 보려는 노력일 것이다. 南北韓 공히 死刑制度를 存置하고 있고, 또 준엄한 법집행을 강조하는 公式 立場을 감안해볼 때 相對方의 억압적 법적 慣行을 비난할 자료는 서로 충분할 것이다. 北韓이 南韓을 사상의 자유조차 保障되어지지 않는 國家라고 비난하는 것이 妥當한 논리라면, 共產主義者는 물론 그에 동조하는 行爲까지 혹독하게 處罰하는 南韓의 法的 形態는 北韓의 立場에서 볼 때는 당연히 南韓은 사상의 자유가 없는 상황으로 인식되어지기에 족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비난하기 위한 자료를 集積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기 위한 관심과 마음의 눈을 틔우는 자세일 것이다.

南韓의 自由民主的 基本秩序 혹은 부르조아적 適法性의 자료 北韓의 法을 평가하려는 일반적인 南韓 法律家들의 태도도 이제는 지양되어야 할 것 같다. 그간의 많은 研究들은, 어려운 여건하에 감행되었다는 功績에도 불구하고, 相對의 약점을 들추어내려는 방향으로 이끌어진 감이 없지 않다. 이러한 연구태도는 현저히 均衡感覺을 상실하고 자신의 이데올로기를 研究對象에 賦課하는 편견의 덩어리를 양산해냈다는 비판을 免하기 어려울 것이다. 나아가 客觀性和 價值中立性이라는 부르조아 사회과학의 최소공준조차 갖추지 못한 研究라는 비난을 받을 소지가 다분한 것이다.

중요하고 트집잡기 위한 研究는 이제 그만두자. (배종대, 1989: 76)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잣대, 자신의 이데올로기를 일단 접어두고 相對方의 論理와 立場에 대해 相對方의 立場에 대해 相對方의 立場에서 이해해보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열린 자세가 요구되어진다.

주지하다시피 45년 이후 北韓體制는 社會主義 思想과 制度를 蘇聯, 中國의 영향하에 受容하면서 形成되었고, 이후 蘇聯, 中國의 內政干涉의 영향권으로부터 政治, 經濟적으로 獨立하면서, 北韓 固有의 社會主義에로의 전개과정을 겪어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北韓法의 이해에는 北韓體制가 形成, 變化하는 데 작용한 기본적인 動力이 무엇이었는가를 優先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대략 思想的으로는 맑스-레닌주의와 主體思想, 政治적으로는 社會主義 強大國의 영향력 程度의 變化, 經濟적으로는 生産力의 수준과 階級構成의 變動 및 社會主義化 段階의 수준 등의 요인을 設定하고 이러한 요인들이 北韓의 刑事法制의 변화에 어떤 내용과 성격을 賦課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北韓刑法은 1950년에 制定되어 1974년에 대폭 改正되었다. 이러한 刑法典의 整備는 각각 先行하는 憲法의 制定에 뒤따라 이루어졌다. 다시 말해 1950년의 刑法은 1948년 北韓刑法의 制定에 뒤이어 만들어졌고, 1974년의 刑法은 1972년의 憲法改正에 뒤이어 이루어진 것이다. 後述하듯이 1984년 憲法은 蘇聯의 스탈린憲法의 영향을 대폭 받고, 맑스-레닌주의 原則을 강조하고 있는 데 반해, 1972년의 憲法은 北韓社會의 社會主義化 段階에 適應하여, 그리고 무엇보다 主體思想이 支配 이데올로기로 된 위에 根本적으로 再構成된 것으로 評價된다. 이러한 憲法의 골격의 變化가 그 體制維持의 중요한 임무를 담당하고 있는 刑法에 영향을 미칠 것은 자명하다. 따라서 本考에서는 刑事法의 變化를 考察하면서, 政治理念上的의 變化와 그것을 가능케 한 社會經濟體制의 變化에 어떻게 적응해 갔는가를 하는 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研究傾向과 方法上の 問題

다른 分野의 研究과 마찬가지로 北韓刑法의 研究에도 相當한 難點과 限界가 노정되고 있다. 北韓研究에 있어서 부닥치는 隘路事項에 대해서는 많은 論文에서 지적되고 있기에 되풀이할 필요는 없겠지만, 여기서 특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北韓刑法의 研究에 있어서 몇가지 치명적인 문제점을 기왕의 많은 論文들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資料의 貧困이다. 北韓自體의 資料가 워낙 빈곤해서인지, 南韓의 資料入手 努力이 부족해서인지, 아니면 資料閱覽上の 애로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北韓刑法에 관련된 北韓文獻들이 너무나 부족하다.¹⁾ 더구나 입수가 가능한 資料도 法學研究가 비교적 활발했던 것으로 생각되는 50년대와 60년대 초반에 걸친 것들이고, 그 때문에 70년대 이후 主體思想으로 彩色된 이후의 刑法에 대한 北韓學者들의 의견을 알기 곤란하다는 점이다. 앞으로 北韓刑法에 대한 일차적 研究資料들이(만일 있다면) 대거 유입될 경우 기존의 研究論文들이 휴지조각으로 화해버릴 우려도 전혀 排除할 수 없는 실정이다.

둘째, 근본적으로는 資料의 빈곤 탓이겠지만, 최근의 研究에서조차 北韓刑法이 1974년에 대폭 개정된 사실을 認知하지 못하고 있다. 가령 法務部에서 낸 “北韓法研究(Ⅱ)—刑法—”에서도 1950년 刑法을 現行刑法으로 오인한 채 分析하고 있다. 최근의 北韓刑法을 취급한 학위논문(노창희, 1977; 김천일, 1985)도 1950년 刑法을 對象으로 삼고 있다. 배중대(1989)도 1974년 개정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다. 박광섭(1988)에는 “1974년

註 1) 北韓法 關係文獻의 種類에 대해서는 최종고(1988), 7—22면에 대체로 소개되어 있다. 國內의 法學者들의 個別論文도 여기에 소개된 이상의 資料를 크게 넘어서는 것 같지 않다.

北韓刑法의 一部改正이 있었다는 外國學者의 指摘이 있다”는 정도만 언급할 뿐 그 내용에 대해서 다루지 않고 1950년 刑法을 대상으로 하여, 그것을 “全體主義적 울타리 속에서 가공할 무기로 利用되고 있다”(240면)고 결론짓고 있다.

이러한 評價와 罵倒가 현 시점에서 부당함은 말할 나위도 없다. 죽은 시체를 살아있는 것으로 오인한 가운데 그를 향해 칼을 휘두르는 격이다. 그러나 이는 研究者만의 잘못이 아니다. 필자 역시 이 논문을 구상하면서 1974년 刑法典을 入手하려고 노력해 보았지만, 현재까지 入手하지 못한 채 이 論文을 쓸 수밖에 없었다.(이하 本文에서 1974년 刑法前에 대한 설명은 전부 再引用임을 미리 밝히고 양해를 구하고자 한다.)

셋째, 法典상의 法과 실제로 適用되는 法 사이에 상당한 乖離가 있을 것은 당연하다. 이 때문에 法이 現實的으로 어떻게 적용, 집행되어지는가를 살펴보지 않고서, 法典條文만 검토할 경우 實定法에 含有된 가치 내지 이데올로기를 액면 그대로 전달하는 길밖에 없다. 法社會學的 접근까지 시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法의 실상을 모른 채 법전과 공식 교재만 가지고는 法現狀에 대한 分析을 해낼 수 없을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이 점에 있어서도 北韓刑法에 대한 研究는 現在 根本的인 限界를 지니고 있다. 刑法事件에 대한 統計資料도, 구체적인 處理方式에 대한 資料도 지니지 못한 狀態에서 法條文에만 의거해 北韓刑法의 성격을 인식하려는 것은 장님 코끼리 더듬기가 될 수밖에 없다. 北韓의 言論은 教育的, 宣傳的 機能을 중시하는 社會主義 言論觀에 입각해 제작되기 때문에 北韓社會의 어두운 면을 보여줄 犯罪關係 기사를 찾아보기 힘든 實情이다. 이러한 사정이 北韓刑法에 대한 이해를 가로막고 있다.

넷째, 研究의 기본적 시각에 대해 다시한번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北韓研究에서 경계해야 할 두가지 태도를 든다면, 하나는 北韓을 絶對惡으로 前提하는 立場이고, 다른 하나는 南韓體制, 南韓의 支配이데올로기의 관점에서 北韓을 일방적으로 재단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反共主義와 冷戰意識에 사로잡혀 北韓體制를 全體主義 내지 金日成獨裁體制로 보고, 北韓刑法에서 긍정적 부분이란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식의 태도는 일단 지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研究論文들의 평가태도²⁾를 통해 研究者들의 立場을 推論해 볼 때 反共主義的 視覺에 의해 예단이 행해졌다는 疑懼心이 들지 않을 수 없다.

南韓과 北韓의 法律에 대한 觀念은 根本적으로 다르다. 법의 비중과 위상이 현저히 다른 까닭에 體制에 대한 고려없이 막연하고 法條文을 중심으로 성급하게 비교하려는 자세는 금물이다. 가령 北韓 刑法에는 罪刑法定主義가 法定되어 있는 데, 北韓刑法에는 類推解釋과 溯及效가 인정되어 있으므로 近代刑法이라고 말할 수조차 없다는 식의 비평은 많은 北韓 刑法關係 論文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항목중의 하나이다. 하지만 이러한 비평에 앞서 적어도 다음 사항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南韓 法制는 植民地 刑法을 계승했기에 法律上的 단절이 없었고, 親日派 숙청을 등산시켰기에 刑法不溯及原則에 크게 制限을 가할 필요가 없었을 지 모르지만, 北韓의 경우에는 전혀 사정을 달리했던 것이다. 人民民主主義와 社會主義段階로 나아갔던 北韓政權의 경우에는 植民地 刑法의 전면적인 撤廢를

註2) 기존의 主要論文들의 다음과 같은 결론을 음미해 보자. “刑事法이란 政府에 대한 반대를 粉碎하기 위한 主要한 手段이며, 또한 社會共同體의 악질분자를 징벌하고 教化하기 위한 중요한 무기”(강구진, 1975: 271), 혹은 “당형법, 사상형법, 정치형법, 위협형법, 숙청형법, 위하형법, 용보형법의... 성격 을 가지고 있는 아주 落後되어 보잘 것 없는 刑法”(염정철, 1980: 206), 심지어 “궁극적으로는 刑法史의 한장에 博物되어야 하는 몰가치적 추상물”(박광섭, 1988: 241) 등으로, 완전한 부정적 평가 일색이다. (정리는 배종대, 1989: 40-41 재인용)

原則으로 삼았기에 類推를 통한 法創造의 가능성을 受容하지 않을 수 없었고, 親日派를 철저히 處斷하기 위해서는 後法の 溯及效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다. 요컨대 北韓體제의 고정된 시각을 가지고 北韓을 보면 반드시 그 實相이 屈折되기 마련이므로, 社會主義 北韓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고 그러한 목적이 실제로 어떻게 얼마나 달성되었는가를 그 스스로 이야기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강진철, 1989 : 195)

본고는 이러한 문제점에 유의하여 北韓刑法의 形成과 전개과정을 北韓의 內在的 立場에 의거하여 일단 분석해 보고자 한다. 다만, 本 研究 역시 기존의 研究에서 참조된 資料를 그다지 뛰어넘지 못하는 까닭에 根本적으로 限界가 있을 수 밖에 없음을 미리 自認하지 않을 수 없다.

3. 植民地法제의 清算과 初期의 法的 實踐

(1) 植民地法제에 대한 認識

해방이전의 韓國社會는 日本帝國主義의 강점하에 있는 植民地反封建社會의 모습을 지니고 있었다. 日本帝國主義는 가장 악랄한 파쇼統治體제를 꾸며 놓는 同時에 植民地的 支配와 掠奪에 유리한 封建的 榨取와 抑壓制度를 保存시킨다. 日帝下의 朝鮮은 資本主義的 關係와 封建的 關係가 뒤엉켜 竝存함으로서 社會階級關係가 全般的으로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된다. 그러나 기본적인 지배와 예속의 요인은 帝國主義的, 封建的 착취와 억압이며 社會의 기본모순은 帝國主義 및 封建勢力과 植民地民衆 사이의 적대적 모순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植民地 統治法體系 역시 이러한 植民地的 억압, 착취와 수탈의 목적에 철저히 복무하게 될 것은 당연하다. 해방당시 時代的 과제를 反帝反封建

人民民主主義의 혁명으로 規定했던 北韓政權의 立場에서 볼 때 植民法는 다음과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먼저 植民法統治法의 기본은 帝國主義者들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보장하는 악법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植民地民衆의 政治的 自由와 權利를 박탈하고자 하는 政治的 탄압법, 주요 생산수단과 경제명맥을 틀어쥐고 물자와 인력에 대한 무제한한 수탈을 보장하는 파쇼적 수탈법, 奴隸教育과 민족우매화를 강요하는 사회문화적 통치악법 등이 포함된다. (심형일, 1987 : 230)

이러한 帝國主義의 직접적 지배와 수탈을 보장하는 법제와 함께 植民法統治法의 주요한 일부를 이루는 것은 봉건적인 관계와 유제를 고착하고 보호조장하는 악법들을 들 수 있다. 帝國主義者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봉건적인 법질서를 인위적으로 보존한다. 帝國主義者들은 植民地나라 人民들의 혁명적 진출을 더욱 가혹하게 탄압할 목적으로 잔인한 봉건적인 刑事法制度를 재확인하여 그대로 적용하며 人民들을 중세기적인 몽매상태로 몰아넣기 위하여 봉건적인 家父長的 가족제도와 상속제도에 법적효력을 부여한다. 특히 帝國主義者들은 植民地에서 농촌의 소작제도를 유지하고 합법화함으로써 지주계급을 비호하고 이들을 植民統治의 계급적 기반으로 삼고자 했다. (심형일, 1987 : 231)

일제의 植民法統治法은 그 적용에 있어서도 철저히 침략성과 반동성으로 일관되어 있음을 北韓研究者들은 강조하고 있다. 다시 말해 帝國主義者들은 植民地 朝鮮에서 흔히 이중적인 법체계를 세우고 특별법을 적용함으로써 극단적인民族的 억압과 차별정책을 노골적으로 실시했다.³⁾ 정상적인 資本主

註3) 심형일은 다음과 같은 예를 들고 있다. “조선강점시기 日帝는 조선사람에게만 <조선태형령>을 適用하였으며 출판물발간과 관련된 경우 조선사람에게는 <구조선정부>시기에 造作된 <신문지법> <출판법>을 적용하였으나 日本人의 경우에는 <신문지규칙>이나 <출판규칙>을 적용하였다.” (심형일, 1987 : 231)

義 발전을 겪는 나라와는 달리 植民地에는 부르조아 民主主義 혹은 自由主義的 法治主義의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었음을 北韓 研究에서는 강조하고 있다.⁴⁾ 요컨대 植民地統治法은 철두철미 帝國主義 침략세력과 그 앞잡이들에게 복무하며 植民地 人民들에게 民族的, 階級的 壓迫을 강요한 가장 악랄한 파쇼악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르게 되면 日帝의 法制를 완전히 폐기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이 자연 도출될 것이다.

(2) 植民地 法制의 清算과 民衆的 法實踐

40여년간 이 땅을 유린했던 日本帝國主義가 패망하고 그 결과 植民地였던 韓國이 獨立과 해방의 새날을 맞이했을 때 植民地體制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韓國民의 생존과 운명을 좌우하는 중차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우리의 열망과 기대와는 무관하게 이미 國際的으로는 美蘇의 分割占領이 예정되어 있었다. 38선을 경계로 각기 진주한 蘇聯軍과 美軍은 이후 해방정국의 향방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 蘇聯軍은 北朝鮮 人民委員會를 통한 간접통치를, 美軍은 스스로 유일한 합법적 통치주체로 자처하며 직접통치를 담당했다. 해방 3년을 거치면서 兩 強大國은 각기 자신의 체제이념을 수용하고 자신의 정치적 교두보를

註 4) “군사봉건적 日帝의 植民地로 된 조선에 있어서는 부르조아 民主主義의 법 새조차 없었다. 〈자유〉를 保障한다는 허위적인 부르조아 政治形態로서의 3권 분립도 없었으며, 〈사법권의 독립〉도 없었다. 조선총독은 조선에 대한 立法, 行政, 司法, 軍事 등 全權을 한손에 장악한 獨裁者이었으며, 재판소도 日本과는 계통이 다른 조선총독부의 재판소이었으며, 〈법률〉은 〈칙령〉 또는 해당 〈법률〉 중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선에 適用되지 않았다...”(심현상, 1957: 38) 이상의 인용에서도 볼 수 있듯이 北韓法學者들의 일본통치법에 대한 評價는 철저한 부정으로 일관되어 있음을 쉽게 確認할 수 있다.

확보할 수 있는 單獨政權을 수립해냄으로써 자신들의 점령목적은 달성할 수 있었다. 이것이 독립과 통일을 통한 진정한 해방의 달성이란 우리의 民族的 課題와는 반대방향으로 이루어졌지만, 強大國의 立場에서 볼 때 이 점은 별 고려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었다.

法的인 側面에서 볼 때. 해방이후 가장 먼저 부딪친 문제는 日帝의 植民地法制, 그 중에서도 특히 刑事法制를 어느 정도로 유지 혹은 청산할 것인가 하는 점이였다. 이 점에 대해 南北韓의 전개는 완전히 달랐다. 南韓을 점령한 미군정은 ‘행정적, 법적 진공상태’를 메우기 위해 기존의 植民地 法制의 골격을 유지, 온존하는 立場을 취하게 되었다. 日帝의 기본법령을 그대로 유지한 채 악명높은 日帝의 탄압법령으로 日帝의 軍國主義와 직결된 약간의 법령을 폐지하는 데 그쳤던 것이다.⁵⁾ 이러한 법적 방침은 “점령군의 보전을 도모하고 점령지역의 공중치안질서의 안전을 기하는’(포고 제2호, 45.9.7)에 주안점을 두었던 미군정으로서는 당연한 귀결이었겠지만, 새로운 법질서를 대망했던 民族的 염원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것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면 北韓의 法的 방침은 어떠했던가. 외래 帝國主義의 植民地 통치를 폭력으로 분쇄하고 統一前線에 입각한 人民民主革命의 성취를 과제로 설정했던 北韓政權의 경우에는 植民地法과 植民地 통치질서의 청산이 가장 일차적인 과제가 되지 않을 수 없었다. 1945년 11월 16일 제정 실시된 北朝鮮司法局布告제2호 (北朝鮮에 시행될 법령에 관한 건)에 따르면 日本의 植民地支配하에 실시된 제반악법과 규정은 영구히 효력을 상실하며(제2조), 새로운 국가건설과 조선人民의 이익에 배치되는 어떠한 질서 및 법도 허용될 수 없음을 선포하고 있다. 이 법규는 조선人民을 억압, 약탈

註5) 상세한 내용은 한인섭(1989: 190—191, 205) 참조.

하고 조선을 日本의 植民地로 전락시킨 모든 악법은 영구히 철폐됨을 법적으로 추인하고 있다. (한락규, 1960 : 22)

이러한 원칙에 따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일본의 植民地法의 반동성과 야만성을 폭로하는 선전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대중의 혁명적 열의와 투쟁기세를 日本法의 분쇄어로 조직동원했다. 모든 부분, 모든 지역에 植民地法의 무효가 선언되었고, 나아가 범죄문건으로까지 규탄되었다. 이러한 법적, 행정적 조치를 통해 植民地法에 의해 수립된 낡은 법질서는 단시일내에 전면적으로 붕괴되었다.

植民地法制에 대한 전면적인 청산작업은 단지 政權的 차원에서만 시작된 것은 아니었다. 공식적인 방침이 내려지기 전에 이미 人民들은 자신들의 기준을 내세워 새로운 규범질서와 재판질서를 추구해나가려는 노력을 전개하였다. 기존의 형사법령을 거부한 가운데 어떤 성문적인 기준이 없이, 人民들은 朝鮮人民의 〈혁명적 법의식〉에 입각하여 적극적인 법적 실천을 감행했던 것이다.

초기의 법적 실천중 주목을 끄는 것은 〈민중재판〉이다. 北韓 문헌에 따르면, 민중재판은 人民들 자신의 創意에 의하여 지방에 따라서 각각 상이한 形態를 가지고 자연발생적으로 시작되었으며 대체로 〈人民재판〉의 이름을 띠고 진행되었다고 한다. (리재도, 1960 : 242) 즉 민중재판은 자신의 해방을 자각하고 나아갈 길에 대하여 각성된 人民들이 응당한 혁명적 要求로서 용납못할 반역자, 친일파, 日帝의 악질경관, 관리들을 처단하기 위하여 수시로 조직되었다고 한다. 아직 의거할 ‘인민의 법령’이 없는 조건에서 민중재판은 人民들 자신의 혁명적인 법의식에 직접 기초하여 進行되었고 民主主義的 자주독립국가 창건을 위한 혁명적인 情熱로써 운명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리재도, 1960 : 242) 북한에서의 이 민중재판은 그후 北韓에서 발전된 人民재판제도의 人民적이고 민주적인 要素를 망아

적 形態로서 지니고 있었고, 초기의 계급투쟁에 적극적 역할을 하였음을 부각시키고 있다.

(3) 刑事法令의 種類와 性格

北韓에서의 人民政權은 해방후 자생적으로 조직된 人民委員會를 모체로 조직되었다.(김남식, 1989: 22) 초기의 人民委員會는 극소수의 친일파, 민족반역자를 제외한 광범한 계층을 대변하는 政權形態로 탄생하게 되었다. 人民委員會는 초기에는 蘇聯軍政下에 있었으나 처음부터 어느 정도 독자성을 띤 행정을 실시할 수 있었으며, 각처에서 출현한 人民委員會의 政治的인 발전의 과정에서 중앙정권인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가 조직되게 되었다. 이 조직은 공산당이 주도하긴 했지만, 일종의 통일전선적 성격을 띤 것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臨時人民委員會는 일제잔재를 청산하고 토지개혁과 남녀평등화를 비롯한 봉건적인 사회적 관계를 철폐하는 사회개혁의 주도체로서의 자기임무를 설정하고 있었다.(김남식, 1989: 23)

이 시기에 제정·집행된 刑事法制는 대략 다음과 같은 전개를 보였다. 처음에는 포고의 형식으로, 곧이어 法令의 형식으로 제정된 刑罰法規들은 46년부터 47년에 집약적으로 나타났다. 이 시기의 법령들은 모두 반제반봉건의 人民民主革命의 성향에 적용하는 것이었고, 아울러 당시의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으로 출현한 임시적인 법령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 시기의 刑事法制는 당의 정책과 민주개혁의 실행을 통하여 새로운 經濟的 토대를 형성하고, 그것에 상응하는 정치적 상부구조를 樹立·強化해야 할 객관적 요구를 반영하고 있었고, 그러한 문제를 둘러싼 심각한 계급갈등의 정도를 보여주는 것이었으며, 계급투쟁에 있어서 강력한 법적 무기로서 가능했던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단계

는 당대의 법에 다음과 같은 특징을 부여했다고 보여진다.

첫째, 당시의 法令은 日本帝國主義의 유제를 청산하고 그 잔재세력을 제거하며 봉건적인 관계를 청산하기 위한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이는 植民地的·封建的인 관계를 청산하기 위한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이는 植民地的·封建的 유산의 철저한 청산을 경과하지 않고서 민주개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체제측의 의지를 잘 보여준다 하겠다. 〈親日派·民族反逆者에 대한 規定〉(1946. 3. 7)은 대일협력자와 민족반역자에 대한 철저한 진압을 표방한 대표적인 입법적 조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당대의 최대과제였던 土地改革의 원만할 수행을 보증하고 토지와 관련된 경제질서를 定立하기 위하여 制定·執行된 법령들이 특히 주목을 끈다. 먼저〈北朝鮮土地改革에 대한 法令〉(46. 3. 5)에는 한 농가에 5정보 이상의 農地를 所有하고 있는 조선인 地主의 소유지를 몰수한다고 規定하여, 봉건세력 및 地主에 속하는 구체적인 대상과 범위를 確定했다. 그러나 土地改革은 워낙 계급간의 이해충돌이 첨예한 領域이었기에 국가적 강제력이 수반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를 위해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는 〈土地改革에 대한 臨時措置法〉(46. 3. 5)을 제정하여, 지주의 책동을 미연에 防止하고 진압하기 위한 措置를 취했다. 이 법의 公布에 의해 축력과 농기구, 주택과 창고, 기타의 건물을 매각, 은폐, 파손, 소각 기타의 方法으로 처분하는 지주에 대해서는〈인민의 적〉으로 선포함으로써 철저한 진압을 기했던 것이다.

아울러 그와 관련된 경제질서 攪亂行爲에 대해서도 단호한 措置가 행해졌다. 가령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는 〈축우절도법에 관한 결정서〉(1946. 3. 25), 〈비료취급임시조치법〉(46. 9. 26), 〈임야관리령위반자 처벌규칙〉(46. 9. 27)등 조치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봉건적 가족제도의 철폐와 남녀평등권의 確立을 위한 일련의 措

置를 들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의미있는 措置는 <북조선의 남녀평
 등권에 대한 법령>(46. 7. 30)일 것이다. 이 법은 ‘日本 植民地政策의
 잔재를 肅清하고 낡은 封建的 남녀간의 關係를 改革하고 여성을 文化的
 社會政治的 생활에 전면적으로 참여시킬것을 目的’으로 표방하고 있다. 이
 에 못지 않게 중요한 조치는 <북조선의 봉건유습 잔재를 퇴치하는 법령>
 (47. 1. 24)인 데, 이는 결혼과 관련된 봉건적 인습을 타파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들 법령들이 철저히 시행됨으로써, 여성들의 지위는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남성과 동등한 權利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박현선, 1989 : 418—426)

(4) 小 結

北韓에서의 논의를 보면 이 시기는 反帝反封建民主主義의 혁명단계이며
 따라서 이 시기의 법은 人民民主主義法으로 특징지워진다고 한다. 人民
 民主主義法은 人民民主主義獨裁의 법으로서 부르조아법도 아니고 社會主義法도
 아닌 특수한 形態의 법으로 規定짓고 있다.(심형일, 1987 : 238)

심형일에 따르면, 人民民主主義法은 植民地的, 封建的 착취와 억압을 청
 산하는 혁명투쟁행정에서 생겨나며 民族解放의 과업과 근로인민대중의 社會
 的 解放의 과업수행에 이바지하는 人民的이며 혁명적인 법이라 한다. 人
 民民主主義法은 노동계급과 농민의 이익과 함께 광범한 각계각층 人民들의
 이익을 결합하는 바, 이는 민주역량의 통일단결을 강화하고 민주적 발전
 을 다그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人民
 民主主義法은 植民地, 半植民地를 겪은 나라에서 광범한 人民大衆을 국가
 와 社會의 주인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법이며, 그러면서도 그 자체목적이
 아니라 社會主義法의 확립을 위한 전제를 마련하는 과도적인 법이라는 것

이다. (심형일, 1987 : 237) 北韓의 학자들은 바로 人民民主主義法の 관점에
에 해방정국의 刑事立法을 자리매김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4. 社會主義로의 過渡期段階와 刑法全의 制定

(1) 序 言

反帝反封建民主主義革命을 통하여 植民地的 封建적 잔재가 일소되고 정치
적으로는 人民政權을 한층 강화하려는 노력이 진행됨과 함께 북한사회는
社會主義革命의 단계로 진입하게 되었다. 社會主義革命을 실시하기 위하여
는 프롤레타리아 獨裁政權을 수립하고, 경제형태를 社會主義 經濟로 진입
시켜야 하며, 資本主義적 잔재를 청산하는 작업이 진행되어야 했다. 이러
한 작업은 대략 1947년경부터 추진되었다고 보여진다.

人民政權의 강화는 곧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표방하는 단독정권의 樹立으
로 귀착된다. 해방정국은 분단으로 어어지고, 그 결과 48년에는 大韓民國
과 거의 동시에 조선인민공화국이 수립됨으로써 南北으로 갈라진 두개의
정권이 출범하게 되었다. 이 人民共和國은 北朝鮮人民委員會를 강화, 발전
시킨 것으로 본격적인 社會主義化를 꾀하는 권력의 핵심을 구성했다.

법적으로 볼 때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憲
法の 채택이다. (48. 9. 8) 이 헌법은 72년 폐지될 때까지 25년간 北韓
의 가장 기본적인 법령이 되었으며, 이 법의 정비에 뒤이어 개별 형법
법규들이 整備, 體系化하기 위한 본격적인 契機가 열리게 되었던 것이다.

(2) 刑法典의 制定의 意義

北韓의 統一的인 刑法制定의 노력은 1947년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즉 1947년 11월 19일 北朝鮮人民委員會는 朝鮮法典 草案作成委員會를 조직하였으며 이 委員會는 刑法典 草案作成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北韓政權의 수립과 헌법의 採擇은 人民主權의 공고화와 社會主義 건설을 위한 강력한 무기로서의 刑事法令의 중요성을 한층 더하게 했고, 그에 따라 법전화의 노력은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이 48년 헌법의 원칙에 기초하여 1950년 3월 3일 최고인민회의 제5차 會議는 기왕의 個別立法과 실무의 經驗을 一般化하고, 선진 소련의 입법과 실무를 참작하여 내각이 제출한 刑法典 草案을〈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刑法〉으로 채택하였다. 이 법은 동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北韓의 법학자들은 이 법전이 지닌 정치적 意義를 대략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우선 이 법의 制定은 法令에 기초하여 형사적 수단에 의하여 수행된 반혁명과의 투쟁에서 거둔 人民들의 승리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반혁명과의 투쟁에서 승리한 결과를 保證하는 동시에 人民民主主義 제도의 공고화를 지향하는 것으로 認識되었다. 또한 이 법전은 새로운 社會主義 社會關係를 보위하고 勤勞者들의 권리와 이익을 전면적으로 옹호 보장하며 그의 물질적 문화적 요구를 충족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한락규, 1960 : 190) 요컨대 이 刑法典의 제정은 기왕의 혁명적 전취물을 지키면서, 社會主義에로 진전하기 위한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무기로서의 의의를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심현상은 이 법전이 지닌 법률적 意義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⁶⁾

註6) 심현상(19579 : 15). 위의 인용은 이 論文의 흐름에 맞추어 약간의 자구수정을 한 것임.

- 1) 우리 역사에서 처음으로 勤勞人民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刑法前이다.
- 2) 징벌정책의 統一性을 더욱 보장하고 온갖 犯罪들과의 성과적 투쟁을 보장한다. 이는 人民主權을 위하여 위험한 犯罪들을 기본적으로 豫見하고 있고, 그간의 재판실무와 犯罪와의 투쟁경험을 일반화한 것이기 때문이다.
- 3) 반혁명과의 투쟁에서 국민들의 혁명적 경각성을 제고시켰으며, 낙후한 인민층에게 새로운 질서와 규율에 대한 전면적 교양을 준다.
- 4) 기왕의 個別的 刑事法令들의 폐기를 의미한다.
- 5) 특히 반국가적 犯罪들에 관한 刑事規範들을 체계화하였으면, 종래 이들과의 투쟁에서는 주로 民主主義的 법의식이 직접 실무를 지도하였으나, 금후는 법의식과 아울러 刑事規範들이 재판실무를 지도하게 된다.
- 6) 刑法의 總則 및 各則의 규범들의 전일적 체계를 完成한 것이다. 특히 총칙은 刑事規範들을 체계적으로 정연하게 規定하고 있고 刑法의 기본원칙을 일반화하고 있다. 各則은 객체와 그 사회적 위험성 정도에 따라 刑事規範을 배열하고 있다.
- 7) 人民民主主義的 遵法性에 관한 이론의 입법적 표현이자 공고화이다.
- 8) 人民民主主義的 遵法性의 가일층의 발전강화를 의미한다.

北韓 刑法典은 우리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크게 총칙과 각칙의 두 부분으로 構成되고 있다.

총칙에서는 刑事立法의 과업과 그의 계급적 目的을 밝히고 그 效力의 한계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형사정책의 일반적 원칙과 犯罪構成要件의 일반적 표징들 및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적용되어야 할 刑罰手段과 그 適用節次를 규정하고 있다.

刑法典 각칙은 反革命分子들과 기타 각종 범죄자들에 의하여 감행되는 다양한 個別的 犯罪形態와 그를 수행한 데 대하여 적용할 刑罰을 규정하고 있다. 즉 刑法典 각칙은 중전의 個別的 刑事法令들을 통합하고 이를 祖國의 統一獨立과 社會主義 기초건설을 위한 새로운 계급투쟁의 조건에 符合하도록 犯罪構成要件과 그에 대한 형벌수단을 보충 변경하였다고 한다. (한락규, 1960 : 190)

(3) 刑法の 基本原則

1950년 刑法이 지니는 특징에 대해서는 여러 論者들에 의해 이미 指摘 되었지만 필자 나름대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刑法の 目的은 罪를 犯한 자에게 刑法을 적용함으로써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및 그에 수립된 法律秩序를 犯罪行爲로부터 보위하는 것(1조)이라 규정함으로써, 국가와 법질서의 防衛를 최우선적인 과업으로 설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둘째, 널리 指摘된 대로 犯罪概念에 있어서 실질적인 犯罪概念을 기준으로 犯罪性 有無를 결정하고 있다. 犯罪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및 그에 수립된 법률질서를 침해할 사회적 위험성이 있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일체의 가법적 행위'라 규정된다. (7조) 다시 말해 사회적 위험성이 犯罪概念의 핵심적 징표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실질적 犯罪概念을 관철하기 위해 北韓刑法은 두개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 刑法各則의 특별구성요건을 형식적으로 充足할 경우에도 '그 행위가 명백히 경미하고 해로운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다시 말해 '사회적 위험성'이 없는 경우에는 죄가 成立하지 않는다. (8조) 그리고 그 반대의 경우, 즉 '범죄적 행위로서 그에 직접 해당하는 규정

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과 종류에 있어서 가장 비슷한 벌에 관한 조항에 준거하여 刑을 과하게 되어 있다. (9조) 이것이 유명한 類推規定이다.

셋째, 刑法의 時間的 효력에 대해서 北韓刑法은 刑法不遯及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즉, 北韓 제5조는 '죄를 범한 자는 그 행위당시의 법령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함으로써 행위시법주의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刑法의 효력의 不遯及原則은 해석상의 원칙이며 立法上의 원칙인 것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 그리하여 北韓 刑法 제17조는 '8.15전 범죄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그 행위의 성질이 공화국에 위협한 것'이라면 형사소추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刑法 제60조는 민족반역자들에 대해 刑法適用의 可能性을 排除하지 않고 있다. (심현상, 1957 : 83)

넷째, 刑罰의 目的에 대해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刑罰의 目的으로는 犯罪者로 하여금 새로운 罪를 犯할 수 없게 하고 人民民主主義國家의 자유로운 공동생활에 적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리고 犯罪의 일반적 예방을 모두 거론하고 있다. 즉 특별예방과 재사회화 및 일반예방이 두루 認定되어 있다. (27조) 단순한 응보형주의가 아니라 목적형주의에 입각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刑罰의 종류 가운데 특징적인 것은 教化勞動이다. 教化勞動은 '특별히 지정한 장소에서 또는 자기의 종전 근무직장에서 노동에 종사시키며 노동보수 중의 일부를 국가에 납부시킴으로써 집행하고, 노동보수부분의 25%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국가에 납입'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33조)

다섯째, 刑法各則上의 특징은 國家의 政治的·經濟的 제도에 대한 侵害를 매우 중시하며, 그러한 行爲를 엄중하게 다스리는 立場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各則의 개개조문은 서술적 規定으로 되어 있어 표현자체가

간명하다는 特徵을 보이고 있다.”⁷⁾ 각칙이 포괄하는 犯罪의 種類와 內容은 매우 많은 편인데, 이것은 刑法典의 制定을 통해 기왕의 刑罰法規를 吸收·統合하고 그에 따라 개별법규를 閉止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여기서 잠깐 指摘하고 넘어갈 것은 北韓刑法의 殘酷性에 대해서이다. 死刑을 규정하고 있는 條文이 50여개에 이르고 있고, 그 중에서 절대적 死刑에 該當하는 條文만도 9개에 이르고 있어 잔혹한 刑罰이라 흔히 비판되곤 한다. (박광섭, 1988 : 240) 과연 北韓刑法이 매우 중형주의에 立脚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러한 평가는 현대 西歐刑法에 비하면 두드러진게 사실이지만, 그 比較對象을 南韓刑法으로 設定할 경우 오십보백보에 지나지 않는다. 배종대 教授가 명쾌히 指摘한 대로, 南韓의 刑法에다 特別刑法을 包含시키게 되면 南韓刑法이 北韓刑法 못지 않게 잔혹하다는

註 7) 이러한 측면을 일컬어 北韓學者들은 다음과 같이 論하고 있다. “공화국 형사입법은 그 표현자체도 인민적이다. 공화국 형법각칙의 행위규정의 압도적 다수가 서술적 규정으로 되어 있으며 또한 술어에 대한 정확한 해설까지도 보여 주고 있다. 그리고 법령의 표현이 간명하며 이것은 준법성 보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이다.”(심현상, 1957 : 59) 한편, 이 문제에 대한 한 南韓 學者는 “구성요건의 표현도 애매하고 불확실하며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 한마디로 조잡하다 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박광섭, 1988 : 240)

여기서 유의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은 누구의 基準으로 法을 이해하는가 하는 점이다. 혹 刑法 專門家의 관점에서 보면 다소 조잡스런 表現도 있겠지만, 대중의 立場에서는 北韓刑法이 전문적 述語로 가득찬 南韓刑法보다 이해하기 더 쉬운 것으로 생각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결국 法이 누구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 졌는가, 그리고 누가 法의 解釋權을 쥐고 있는가 하는 根本的인 문제를 간과한 채, 자신의 잣대만을 代入하는 것은 客觀的인 分析을 目的으로 하는 학자의 임무가 아니다.

사실이 드러난다.⁸⁾ 잔혹성에 대한 終局的 判斷은 실제의 死刑執行數와 징역 기타 刑罰의 적용상을 비교해서 얻어질 터인데 그에 대한 公式的 資料는 入手할 수 없는 까닭에 留保할 수밖에 없다.

다음에는 1950년 刑法과 관련하여 특히 많은 爭點이 되었던 두가지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는 北韓刑法이 蘇聯刑法으로부터 어떠한 영향을 얼마만큼 받았는가 하는 점이다. 이는 北韓刑法이 單純한 선진 社會主義國家의 法制를 모방 계수했는지, 北韓의 人民民主主義段階의 법체함을 어떻게 反映시켰는지를 確認하기 위해서이다. 둘째는 北韓刑法에 있어서 罪刑法定主義의 問題를 어떻게 解釋해야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 점은 北韓刑法을 둘러싼 술한 물이해와 意圖的 曲解를 是正하기 위해 적절히 解明될 必要가 있다.

(4) 北韓刑法과 蘇聯刑法과의 關係

강구신 教授에 따르면, 北韓刑法은 當時<러시아 소비에트 聯邦 社會主義 共和國>에서 시행중이던 1926년의 刑法典을 거의 그대로 모방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리고 北韓의 法學者도 이 事實을 否認하지 않고 있다고

註 8) 배종대(1989: 48—50) 참조. 배교수는 이 글에서 南北韓 刑法을 비교하면서 北韓刑法과 南韓의 狹義의 刑法만을 비교대상으로 設定하는 것은 對象範圍의 선정에 잘못이 있고, 마땅히 南北韓 刑法全體를 비교하여야 함을 指摘한다. 南北韓 刑法이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악명높은 잔혹성으로 인해 南韓 學者들은 온당한 균형감각만 갖추고 있다면 오히려 北韓刑法의 立場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다는 逆說도 成立될 수 있다. 우리도 잔혹한 刑事法制下에 살면서 그것이 잔혹하기 때문에 형벌법규가 관대화되어야 된다는 주장을 하지 않고 지나친 경우가 많았으니까. 또 한가지는 잔혹한 刑法條文들은 國家的 法益에 관한 罪, 軍事上的 犯罪에 특히 두드러지는 바, 이는 南北韓이 상호 相對을 絶對的인 원수(원수)로 보는 데 起因하는 것이다. 따라서 北韓刑法의 잔혹성, 혹은 南韓刑法의 잔혹성을 진심으로 문제삼고자 한다면 南北韓의 적대감과 軍事的 대치상황을 克服하는 길만이 그에 대한 合理的 해결책임을 쉽게 인지할 수 있을 것이다.

보고 이는 45년 이후 北韓의 각분야에 나타나기 시작한 '소련문화의 유입'의 일부로써 이해하고 있다.(강구진, 1975 : 169) 그리고 이러한 논조는 南韓의 다른 研究者에 있어서도 대차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다. 심지어 어떤 論者는 이를 擴大하여 北韓刑法이 세기의 惡法中の 惡法이라 불리우던 스탈린 刑法을 模倣했음을 당연한 전제로 하여 논의를 展開함을 본다.(박광섭, 1988 : 209)

본격적인 論議를 展開하기에 앞서 北韓刑法의 이해를 위한 基礎知識부터 점검해 보자. 우선 1926년의 蘇聯刑法은 新經濟政策(NEP) 하에서 制定된 것으로 어떤 의미에서건 스탈린 刑法이라 불릴 수 없다. 스탈린이 중요한 職責에 있긴 했지만, 이 時點에서는 스탈린은 죽은지 얼마안된 레닌의 영향력을 압도할 수 있는 位置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1936년 蘇聯憲法을 스탈린 憲法으로 부르긴 하지만, 1926년 刑法을 스탈린 刑法으로 부르는 것은 蘇聯의 歷史的 經驗에 符合하지 않는다. 나아가 이 刑法을 어떤 社會主義刑法 研究者가 '세기의 악법중의 악법'으로 부르고 있는지 그 근거를 알고 싶을 따름이다.

1920년대 初中盤의 蘇聯은 國民經濟의 再建 및 社會主義化의 履行이라는 新經濟政策에 의해 特徵지워진다. 이 政策의 골자는 프롤레타리아 獨裁를 推進하는 國家가 소위 國民經濟의 관리고지(commanding heights)를 장악하면서, 계획적 통제하에 한정된 시장의 자유(資本主義的 要素를 一定한 成長)을 許容하는 것이었다.(한인섭, 1986 : 58) 法的으로 볼 때 新經濟政策은 革命的 합목적성 내지 革命的 法意識과 같은 抽象的 概念으로부터 革命的 適法性 원리로의 轉化·發展이 이루어진 시기였다. 權力이 시행하는 經濟政策에 基礎하여 形成되는 많은 社會關係들은 法律로 나타나고 재판절차에 의해 보호되어야 한다는 觀點이 이 時期에 널리 披瀝되었다. 그리고 그러한 要請을 充足시키기 위해 法學이 活性化되고 法典이 整備된 시

기이기도 했다.

刑法立法의 分野에서도 1920년대 蘇聯은 대단한 發展을 이룩한 時期였다고 할 수 있다. 이 時期의 主要 法制로서는 社會主義 國家 最初의 刑法典으로서 總則과 各則을 정비한 <러시아共和國 刑法典>이 採擇되었고 1924년에는 소비에트 聯邦 全域에 걸쳐 適用되는 <蘇聯邦 및 聯邦構成共和國刑事立法의 基本原理>(總則만을 規定)가, 그리고 1926년에는 다시 <러시아共和國 刑法典>이 採擇, 公布되었다. (한인섭, 1986 : 61)

北韓法이 1920년대의 이러한 法制를 參考했음은 여러가지 側面에서 매우 분명하다. 가령 日本法, 韓國法보다 社會主義的 發展을 指向하는 北韓의 立場에서는 당시 蘇聯에 通用되고 있었던 1926년 刑法典이 더욱 편리한 指針書가 되었을 것이다. 전체적인 構成과 刑法의 目的, 機能, 效力範圍에 이르기까지 北韓刑法은 蘇聯 刑法의 영향권 내에 들어있다고 할 수 있다.

간단히 1926년 蘇聯刑法과 1950년 北韓刑法의 刑法各則의 장별 體制를 보면 다음과 같다.

1926年 蘇聯刑法典	1950年 北韓刑法典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國家犯罪 2. 行政秩序 違反의 罪 3. 職務犯罪 4. 政教分離 違反의 罪 5. 經濟犯罪 6. 個人的 生命, 身體, 自由, 名譽에 대한 罪 7. 財産犯罪 8. 人민의 保健, 公共안전秩序에 대한 罪 9. 軍事犯罪 10. 부족적 慣習의 잔재에 의한 罪 11. 군사상 犯罪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國家主權 敵對에 관한 罪 2. 國家管理侵害에 대한 罪 3. 國家所有, 社會 및 協同團體 所有 侵害에 대한 罪 4. 人權侵害에 관한 罪 5. 人民의 財産侵害에 관한 罪 6. 勞動法令 違反에 관한 罪 7. 公務上 犯罪 8. 經濟에 관한 罪 9. 管理秩序 侵害에 관한 罪 10. 사회적 安全 및 人民保健 침해에 관한 罪

위 도표에서도 볼 수 있듯이 두 刑法이 지닌 상당한 類似點은 쉽게 確認되어질 수 있다.

그러나 北韓刑法이 蘇聯刑法을 거의 모방한 것이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다고 본다. 1945년부터 1950년까지의 人民民主主義段階와 初期社會主義過程에서의 축적된 법적 체험이 50년 刑法에 반영되어 있음이 쉽게 확인되어질 수 있는 것이다. 北韓의 문헌에서는 北韓法과 蘇聯法의 관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이 법전들(50년의 형법과 형사소송법, 재판 소구성법을 지칭)은 우리 당의 지도 밑에 우리 당이 계승한 빛나는 혁명전통을 구체적 실정에 적용하여 실천하는 과정에 이룩된 실천 및 법법에서의 성과들을 소련의 선진적 법법들의 우수한 모범을 섭취하면서 체계화한 것이다”(리재도, 1960 : 249) 다시 말해 北韓의 혁명단계와 법적실천의 내용을 社會主義法인 蘇聯의 刑事立法의 틀속에서 체계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蘇聯刑法의 단순한 모방으로 부를 수는 없다.

(5) 罪刑法定主義의 問題 : 類推解釋과 溯及效의 認定

아마도 北韓刑法에서 가장 비난의 초점이 되어 있는 것은 類推해석과 소급효를 인정함으로써 近代刑法의 기본원리인 罪刑法定主義를 위배하고 있다는 것이다. 類推해석의 법적 근거는 北韓刑法 제9조에서 인정되고 있다. 그리고 刑法의 시간적 효력에 대해서는 北韓刑法은 不溯及의 원칙을 기본원칙으로 인정하고 있다.(5조) 다만 刑法 제17조의 반대해석을 통해 해방이전의 실질적인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溯及的 處罰을 인정하고 있으며, 제60조에는 “반국가적 범죄 및 친일적 사상을 가지고 민족해방운동을 적극적으로 반대한 행위에 대한 (형사소추위) 시효의 적용은 재판소의 자유재량에 의한다”고 함으로써 시효제도에 대한 例外를 인정하고 있다.

우선 不溯及의 原則부터 살펴보자. 이 점에 있어서 北韓刑法의 立場은 전혀 이상할 게 없다. 北韓刑法은 刑法不溯及의 원칙을 인정하면서 단지 8·15 이전의 친일파와 민족반역자에게는 溯及處罰이 행하여져야 하고, 또 이들 犯罪에 대해서는 형사시효를 적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의 경우에도 <反民族行爲處罰法>(1948.9)을 통해 이러한 溯及立法

이 國民的 合意속에 制定되었지만, 친일파와 이승만 政權의 策動으로 인해 剝奪되었을 따름이다. 이 법을 溯及立法이라고 비난할 수 있을 것인가. 게다가 독일의 경우 나찌 전법들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認定하지 않는 예를 감안한다면 北韓刑法의 이러한 立場은 전혀 무리한 일이 아닐 것이다.

둘째, 類推해석에 대해서는 北韓刑法이 실질적 刑法概念에 입각해 있는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먼저 北韓政權이 日帝의 植民地 法制를 剝奪함으로써 생겨난 法的 공백은 人民의 혁명적 법의식에 입각한 규범창조를 통해 점차 세워졌지만, 완벽한 법전화의 단계에 이를 만큼의 기간이 經過한 것은 아니었다. 다시 말해 법적 공백상태에서 새로운 規範秩序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犯罪의 기준은 실질적 犯罪概念이 되지 않을 수 없었고, 사회적 위험성이 있지만 法規가 미비된 경우를 處罰하기 위해 類推制度가 가진 기능에 주목했던 것이다. 類推制度의 現實的 意義에 대해 北韓學者는 “계급적 원수들의 새로운 반항형태들과 예리하게 투쟁케 하며 나아가서 현행 형법규범들의 발전가능성을 주며 이를 촉진시키는 데 있다”(심현상, 1957 : 77)고 지적하고 있는데, 北韓의 법적 현실에서 類推制度를 통한 實定法 補完의 기능은 不可缺했던 것이다.

물론 이 類推규정이 自意的으로 활용되고 권력의 목적에 남용될 때 刑法의 보장적 기능이 有名無實해질 가능성을 排除할 수 없다는 지적은 妥當성이 있을 것이다.(강구진, 1975 : 182) 그러나 北韓문헌을 보면 이 類推제도도 엄격한 준법성의 조건하에 적용되어야 함을 인식하고 있으며, 그 조건에 대한 해석론을 발전시키고 있음을 볼 수 있다.(심현상, 1957 : 77-81) 이렇게 볼 때 類推제도가 언제나 自意的이고 남용될 여지를 주는 것은 아니며, 심지어 罪刑法定主義의 전면적이고 실질적인 부정(박광섭, 1988 : 241)이라고까지 단정할 근거는 거의 없다고 생각된다.

類推제도의 문제에 대해 示唆點을 얻기 위해서는 우선 그것이 처음으로 채택되었던 蘇聯法學界의 논의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類推규정은 1922년 〈러시아공화국 刑法典〉 제10조에서 처음으로 채택되었다. 그런데 이 규정을 소비에트 法の 본질과 관련하여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를 둘러싸고 커다란 論爭이 야기되었다. 당시 이 규정을 지지했던 論者들은 贊成論據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즉 모든 종류의 犯罪가 舊刑法典에 규정하는 犯罪와 상이한 오늘날에 있어서는 모든 종류의 犯罪를 망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때문에 실제로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犯罪行爲가 생겨난 경우 裁判所는 類推적용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類推제도를 인정할 경우에도 이를 無原則하게 적용하는 것은 許容되지 않았다. 類推는 항상 일반원칙에 대한 예외로 適用되었고, 재판소가 새로운 노동권력의 법질서의 관점에서 명백히 위험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만 허용되었다. 이와 같이 학설과 판례, 및 사법인민위원회 훈령 등을 통해 類推에 대한 엄격한 適用基準이 정립되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인섭, 1986 : 62 ; 조국, 47-48) 또한 類推규정은 스탈린 비판 이후 제정된 1958년 〈형사입법의 기초〉를 통해 明示적으로 排除되기에 이른다.

北韓 學者들이 蘇聯의 이러한 法的 상황에 대해 상당한 識見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北韓刑法에서 蘇聯의 類推규정을 받아들인 것은 이행기에 있어서 다양하게 발생하는 犯罪類形 모두를 刑法典 속에 捕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基因하는 것이며, 실질적 犯罪概念과 形式的-法的 犯罪概念을 일치시키려는 의지의 산물이고, 계급사법의 합목적성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무기의 性格을 지닌 것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5. 社會主義의 確立과 1974年 刑法典의 制定

(1) 統治 이데올로기의 變化 : 主體思想의 發展

모든 共產國家는 社會體制의 모든 영역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統治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다. 이 이데올로기는 두말할 여지없이 맑스-레닌주의이다. 北韓 역시 48년 헌법 이래 맑스-레닌주의를 그들의 공식 統治이데올로기로 채택해 왔다. 北韓政權 樹立 초기에 '사회주의혁명과 건설'을 위해 채택한 맑스-레닌주의는 러시아의 社會主義혁명과정에서 스탈린에 의해 틀잡힌 맑스-레닌주의였다. 그러나 이런 이념을 기반으로 삼아 北韓에서 社會主義 혁명과 건설을 추진하다 보니 蘇聯의 경우와는 다른 고유한 경험과 특수성을 노정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를 合理化, 理論化하는 과정에서 北韓實情에 부응하는 統治이데올로기를 創案해내게 되었다. 이것이 곧 主體思想이었고, 社會主義의 발전에 따라 체계화되고 구체화되어 나갔다. 따라서 이데올로기적 관점에서 볼 때 北韓의 社會主義化 과정은 맑스-레닌주의로부터 점차로 主體思想으로 강조점이 이동해나가는 것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主體思想이 公式的으로 대두된 것은 50년대 중반 中蘇 이념분쟁의 와중에서 자주성을 견지하고 또 친소 친중파의 권력기반을 와해시키기 위한 고려에서 나온 인상이 짙다. 그러던 것이 社會主義的 발전을 추진함에 있어서 청산리 방법, 천리마 운동, 대안의 사업체제와 같은 獨自的인 개발전략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더욱 가공되었고, 나아가 北韓의 公式的인 支配이데올로기로서의 기반을 굳히기에 이른 것이다. (서대숙, 1989 : 261이하)

北韓의 公式的인 이데올로기의 변화는 당규약과 憲法에서도 쉽게 확인될

수 있다. 먼저 48년 憲法에서는 맑스-레닌주의를 指導的 指針으로 삼을 것을 宣言했다. 1961년 共產黨 規約에서는 “조선노동당은 맑스-레닌주의의 학설을 자기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 그리고 “...수정주의와 온갖 표현들을 반대하며, 조선혁명과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과 국제공산주의 및 노동운동에서 맑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을 고수한다”고 함으로써 맑스-레닌주의를 公式 이데올로기로 재차 천명했다.(고성준, 1988 : 21)

그러나 그 후 10여년간 金日成에 의한 ‘주체확립의 투쟁’을 거치면서 1970년 개정된 당규약 및 1972년 憲法에서는 “조선노동당은 맑스-레닌주의와 우리나라의 현실에 그를 창조적으로 적용한 김일성 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자기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고 함으로써, 主體思想을 맑스-레닌주의와 동격으로 끌어올렸다. 이어 1980년 개정된 당규약에서는 “조선노동당은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 혁명사상을 유일한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고 천명함으로써 主體思想을 北韓의 유일사상으로 규정하기에 이르렀다.(고성준, 1988 : 15-16)

(2) 憲法構造의 變化

北韓은 1972년에 기왕의 憲法을 폐지하고 ‘사회주의의 헌법’을 채택하였다. 北韓의 新憲法은 기존의 발전을 반영하고 北韓內에서의 체변화를 재확인하는 것으로 보았다. 1948년 憲法이 人民民主主義의 혁명을 반영한 것인데 반해 1972년 憲法은 北韓이 프롤레타리아 獨裁에 의해 통치되는 社會主義國家임을 선언하였다. 이 憲法은 北韓의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에서 이룩한 모든 업적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되었다. 1948년 憲法이 蘇聯의 영향하에 제정된 데 반해, 1972년 憲法은 北韓의 主體思想에 의해 지도되고, 蘇聯의 憲法모델로부터 벗어나 독자적인 憲法

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新舊憲法上의 經濟條項을 비교해보면 두 憲法이 담고 있는 경제단계상의 차이를 쉽게 알아볼 수 있다. 舊憲法이 모호한 경제규정을 두고 있었는데 반하여, 新憲法은 17개 條項으로 構成된 1개장에서 완전히 경제에 관한 규정을 다루고 있으며, 直間接으로 경제체제에 관한 기타 條項들도 상당수가 된다. 新憲法은 北韓이 자립적인 민족경제의 토대에 의거하는 社會主義國家라는 선언으로 시작된다. (2조) 나아가 新憲法은 北韓經濟가 공업화를 통한 社會主義的 생산 및 경제발전원칙에 기초하는(24조) 계획경제(31조)임을 뚜렷히 밝히고 있다.

이러한 自力更生과 自立經濟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력은 主體思想이며, 이와 관련된 大衆動員體制가 계급노선과 군중노선인 것이다. 北韓憲法에 들어있는 천리마운동(13조), 청산리정신과 청산리 방법(12조), 대안의 사업체제(30조)에서 보여지는 혁명적 군중노선은 北韓社會主義의 體制의 한 특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할 것이다.

新憲法에 대한 北韓 스스로의 평가는 전적으로 主體思想의 테두리 내에서 행해지고 있음을 확인하기란 어렵지 않다. 그들의 公式立場에 따르면 1972년의 社會主義 憲法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과 창조성을 전면적으로 옹호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기본법'으로 定義된다. (사회과학출판사, 1977 : 12)그들에 따르면, 社會主義下에서 憲法에 기본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人民大衆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옹호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으로서의 社會主義 法體系의 전일성과 統一性を 보장하고 그 복무적 역할을 강화하며 社會主義 國家制度를 공고발전시켜나가기 위한 客觀的 要求로 된다. 國家社會生活의 모든 분야에 걸쳐 人民大衆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원만히 보장하고 그들을 하나의 方向으로 움직여가도록 하기 위하여는 프로레타리아 獨裁의 강철같은 國家的 規律과 법질서를 確立하여야

하며 그를 위해서는 國家의 基本法을 명확히 設定해야 한다는 것이다.(같은 책 : 24)

그러면 新憲法은 이전의 憲法과 다른 어떤 특색을 보이고 있는가. 北韓의 說明에 따르면, 1948년의 人民民主主義憲法은 반제반봉건 民主主義革命의 성과를 고착하고 社會主義 혁명수행에 유리한 客觀的 조건을 마련하는 法的무기로 평가된다. 舊憲法은 제국주의적, 封建的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근로인민대중의 社會的 지위를 법적으로 옹호하고 그들의 自主性과 創造性의 실현에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같은 책 : 30)

그러나 人民民主主義憲法下에서는 당시의 사회경제단계의 性質上 소상품적인 개인경리와 資本主義的 경리를 어느정도 許容할 수 밖에 없어 사적 착취관계를 완전히 제거하는 조치를 取할 수 없다고 본다. 人民民主主義의 憲法下에서는 '제국주의 세력 및 그와 결탁한 반동계급과 계층'을 獨裁의 對象으로 하지만, 착취계급 일반을 다 부정하지 못하며 민족자본까지 包括하는 각이하고 복잡한 계급구성 밑에서 그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요컨대 人民民主主義憲法은 先行한 착취사회의 憲法과는 달리 노동계급을 비롯한 勤勞人民大衆의 자주성과 창조성을 옹호하기 위한 법적 무기를 마련하는 데 劃期的인 里程碑가 되지만, 社會主義 제도의 발전에 따라 필연적으로 한계를 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같은 책 : 31)

金日成에 따르면, 1972년 社會主義 憲法은 '공화국 북반부에 수립된 사회주의제도와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법적으로 옹호하며 노동계급의 혁명위업을 수행하는 데 복무할 사명을 지니고 있다'. 이 때 獨裁의 對象이 되는 것은 '내외의 원수', 具體的으로 말해 '옛 처지를 되찾으려는 꿈을 버리지 않고 있는 전복된 지주, 자본가 계급 잔여분자 및 내부의 적대분자들과 결탁하여 사회주의 제도를 공격하려는 제국주의자'들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계급적 獨裁를 主張하고 있다. 적대분자에 대한 진압적 역할은 이와 같이 社會主義憲法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된다. 이를 위하여 社會主義 憲法은 '계급노선과 균중노선의 관철, 프롤레타리아 獨裁의 國家的 規律과 법질서의 강화, 社會主義 제도와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는데 대한 무장력의 사명, 제국주의자들과 온갖 적대분자들의 책동에 대한 혁명적 경각심의 제고 등 계급적 원수들을 반대하는 데서 견지해야 할 기본행동준칙들과 규범을 밝혀'주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본다. (같은 책 : 51)

적대계급에 대한 진압 수단과 함께 重要的 社會主義 憲法은 '은 사회를 혁명화, 노동계급화하는 강력한 수단'으로 복무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되고 있다. 이는 社會主義 憲法의 조직의 조직동원적, 교양적 役割이라고 불리우는데, 이 役割은 社會主義 憲法에만 있는 고유한 현상이라 강조되고 있다. (같은 책 : 56) 이러한 役割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의 意思와 要求를 憲法規範에 충실히 반영하여야 하고, 그러한 작용을 뒷받침할 규범적 擔保가 있어야 함이 주장된다. 이러한 要請에 적용하여, 社會主義 憲法상의 政治, 經濟, 文化生活의 제원칙들은 社會主義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사상혁명과 문화혁명을 강화하고 社會主義的 생활양식을 確立하여 은 社會의 혁명화, 노동계급화를 다그치는 강력한 手段으로서의 性格을 지니고 있다고 主張되고 있다.

(3) 刑法典 改正과 改正刑法の 特徵

1972년 社會主義 憲法의 制定에 뒤이어 기본적인 國家法令의 개정작업은 불가피하게 要求되었다. 전반적인 法制의 특징은 刑事關係分野를 규제하는 법규보다 경제관리분야를 取扱하는 법규가 많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법규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細分化되고 具體化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要請에 맞추어 1950년에 제정 실시된 刑法典과 刑事訴訟法典을 全面的으로 개정하는 作業이 이루어졌다. 最古人民會議常設會議는 1974년 12월 19일 결정으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법전형식으로 채택하고, 1975년 2월 1일부터 이를 실시하게 되었다. 이 刑法과 刑事訴訟法은 그 구성체계와 내용에 있어서 舊刑法 및 刑事訴訟法과 根本으로 상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⁹⁾ 이는 社會主義的 勤勞者의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蹂躪하는 犯罪와의 투쟁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立法으로 주장되고 있다.

新刑法典은 모두 5편 17장, 215조로 구성되고 있다. 우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형사정책의 기본>이라는 편을 신설하여 당의 형사정책 집행에 協力하는 무기로서의 刑法의 사명을 規定하고 있다. 또한 犯罪 및 刑罰에 관한 一般原則편을 두고 있고, 反革命犯罪 一般犯罪 군사상의 犯罪를 엄격히 구분하는 章, 節을 두어 犯罪의 특수성에 따라 取扱을 달리하고 있음이 보여진다.

즉 反革命犯罪로서는 국가주권과 社會主義制度에 반대하는 反革命犯罪(51조 이하), 조선민족해방투쟁에 反對하는 犯罪, 反革命犯罪와의 투쟁을 犯罪로 들고 있다. 일반犯罪로서는 첫째로 社會주의 경제를 侵害하는 犯罪로서 社會主義的 소유를 侵害하는 犯罪, 社會主義 경제관리운영질서를 侵害하는 犯罪를 들고 있다. 그리고 둘째로는 社會主義文化를 侵害하는 犯罪가 있다. 셋째로는 國家의 行政질서를 侵害하는 犯罪로서 國家의 행정질서 일반을 侵害하는 罪, 公民의 국방상의 義務違反罪, 國家. 군사비밀

註9) 김규승(1988:126)참조. 이하 改正刑法과 刑事訴訟法에 대한 說明은 전적으로 김규승의 논의에 의존한 것이다. 筆者는 改正된 법조문을 入手하지 못하였으므로, 이하에서의 判斷은 筆者의 意見이 아닌 單純한 引用임을 미리 밝히둔다.

보호질서侵害罪, 국경출입항행질서침해罪로써, 범죄와의 투쟁을 저해하는죄, 관리 간부의 직무상의 범죄등이 있다. 넷째로 사회주의적 공동생활질서를 침해하는 죄로서, 不良行爲罪, 직권체용죄 등 11개 항목의 罪를 들고 있다. 다섯째, 국민의 생명, 건강, 인격을 침해하는 犯罪로써 殺人罪, 傷害罪, 人格 및 人格上의 자유侵害罪, 性的 犯罪 등이 있다. 여섯째, 국민의 개인소유를 침해하는 犯罪로써는 개인재산약취죄, 개인재산파괴죄 등이 있다.

刑法과 함께 개정된 刑事訴訟法은 10장 245조로 構成되어 있고, 刑事事件 處理의 原則과 制度, 形式과 節次를 規定하고 있다. 刑事訴訟法典은 무엇보다 刑事事件 取扱處理에 訴訟擔當機關이 지켜야 할 일반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우선 事件의 處理에 당의 지도를 성실히 받는 革命的 規律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要件대 刑事訴訟法에는 수사, 예심, 검찰, 재판기관이 刑事事件을 取扱함에 있어서 계급노선과 군중노선을 관철할 것을 요청받는다. 또한 이들 기관이 犯罪를 적발처리할 경우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에 따라 정치활동을 선행하여 대중을 動員하고 대중의 힘과 지혜에 依據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4) 社會主義의 法務生活과 法秩序 遵守의 강조

70년대 이후 主體思想이 法理論과 法律 전반을 전일적으로 지배하게 됨에 따라 법규범과 規定에 대한 엄격한 준수를 正當化하고, 이를 社會主義 法務生活理論으로 정립하게 되었다. 이에 관한 널리 알려진 저작은 金正日의 <社會主義 法務生活을 강화할 데 대하여>이며, 그를 부연하거나 보충하는 많은 논문이 나오고, 또 人民과 國家政權機關의 擔當者들이 그 이론을 生活化하도록 하는 學習이 進行되었다. (김영철, 1980; 홍극표,

1983 ; 심형일, 1987)

北韓文獻에서 보여지는 主體思想 法務生活의 기본적 요구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모든 社會成員이 법규범과 규정을 자각적으로 준수집행하도록 해야 한다. 그 이유로서는 社會主義的 법규범과 규정이 바로 수령이 제시한 당의 노선과 政策을 法的으로 表現한 것이라든가, 근로 인민의 意思와 利益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 거론되고 있다.(김영철, 1980 : 21-26) 다시 말해 自覺的 法執行은 인민대중의 자주적 權利와 창의적 威力이 발양되는 인민대중의 법이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에 대한 인민의 충실성'때문에 가능하다는 논리이다.

둘째, 法規範과 規定은 엄격히 준수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法을 어긴 者는 공민으로서 마땅히 지닌 義務를 수행하지 않고 社會에 否定的 效果를 미치게 되므로 반드시 法的 추궁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法規範의 制裁的 性격을 프롤레타리아 독재실현의 공간이 된다고 한다.(김영철, 1980 : 34) 이는 法規 자체가 과학적으로 제정된 행위준칙이고, 또 수령의 革命思想과 그 구현인 당노선과 政策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엄격히 지켜져야 하고, 만일 自發的으로 준수하지 않을 때는 國家는 강제력에 의거하여 그것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法規範과 規定에 대한 의무적인 준수집행을 강조하고 있다. 社會主義的 法規範과 規定은 人民의 意思를 반영하여 國家가 제정한 것인만큼 個別的인 사람들의 意思와 요구는 법에 구현된 全體人民의 意思와 지향에 무조건 복종되어야 한다고 하여, 법에 대한 무조건적 복종을 강조하고 있다.(같은 책 : 38) 社會主義 社會는 계획경제이며 모든 단위사업과 생활이 밀접히 聯關되므로 사회생활 전반은 하나의 有機體와 같이 움직인다. 따라서 사소한 法違反 범위반도 사회주의 사회의 정상적인 運營에 指障을 주게 된다는 論理에서, 法에 대한 의무적인 복종의 重要性을 강조한다.

요컨대 社會主義 法規範과 規定은 人民과 수령의 것이므로 自覺적으로, 엄격히 준수집행되어야 하며, 무조건 의무적인 복종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서위 社會主義 法務生活의 요체인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可能케 하기 위한 制度的 방안으로 들고 있는 것은 첫째로, 法規範과 規定의 끊임없는 改善完成, 둘째로 人民大衆에게 혁명적 준법의식을 넣어주는 解說과 教養(遵法教養)의 강화, 그리고 셋째 법적 統制를 끊임없이 강화할 것 등이다.(같은 책 : 42 이하)

우선 國家가 法規範과 規定을 모든 부분, 모든 단위에 걸쳐 물샐틈 없이 세밀하고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는 위법성이 發生할 수 있는 틈을 없애고 社會主義社會의 계획적 運營과 그의 公同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方法으로 인식된다. 또한 法規範의 준수집행을 위한 양대 무기로 思想教養과 법적 통제의 강화를 들고 있다. 특히 國家의 법적 통제는 社會主義 建設이 심화발전될 수록 끊임없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된다.

그리고 이러한 社會主義 法務生活을 지도강화하기 위하여 社會主義法務生活 指導機構를 設置한 것으로 보인다. 이 機構는 '국가수반의 유일한 영도 및 이에 해당 관할 지역내의 법무생활에 대하여 주권적 기능을 수행하는 비상설적인 국가기구'(같은 책 : 70)로 규정될 정도로 중요시되고 있다. 이 機構는 '모든 군중들이 혁명적인 制度와 질서속에서 일하며 생활하도록 강하게 통제하며 그들로 하여금 법규범과 규정의 요구대로 움직이도록 일상적으로 지도하고 감독통제'할 임무를 부여받고 있다.

이상의 논의에서 볼 수 있듯이 北韓에서의 法에 대한 태도는 法의 중요성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지 않다. 오히려 계급적 독재의 手段으로서 法規範과 規定에 대한 자발적 혹은 강제적인 遵守가 계속 강조되고 있으며, 또 法規定의 整備와 細密化, 法의 준수집행을 擔保하기

위한 思想的, 法的 통제의 重要性이 역설되고 있다. 따라서 北韓에서는 “전체적으로 법에 의한 사회통제와 그에 필요한 실정법의 완비와 그 법들의 규범력 확보의 필요성의 의미가 약화되고 있다.”(강진철, 1989 : 213)는 입론은 北韓 스스로의 주장에 비추어 보아서도 妥當性이 없다. 또한 實定法體系의 객관성과 예견가능성의 意味와 刑法의 일반예방효과, 法的 規範的 性格이 경시되고 있다는 주장도 역시 받아들이기 힘들다.

사실은 오히려 法的 重要性이 계속 강조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그리고 北韓의 法體驗에서 서구 마르크시즘의 법고사설¹⁰⁾과 같은 논리가 진지하게 檢討된 흔적은 없다. 요컨대 北韓에 있어서 法은 계급적 적대자에 대한 프롤레타리아 獨裁의 중요한 手段으로, 人民에 대한 조직동원적, 교양자적 手段으로, 그리고 나아가 혁명적 수령관과 주체사상의 강화의 手段으로 積極的으로 活用되어 왔고, 이러한 경향은 70년대 이래 社會主義 法務生活理論과 주체의 法理論에 의해 더욱 강화되고 있는 인상도 든다.

註10) 마르크스와 엥겔스, 레닌, 그리고 초기의 소비에트 法理論家들은 國家와 法이 本質的으로 계급지배를 관철하기 위한 강제기관이며, 따라서 적대계급으로 분열된 社會가 지양될 때—즉 공산주의 단계에 도달할 때— 法과 國家는 서서히 고사(Withering away)할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초기의 이론가들은 法에 대한 일종의 허무주의적, 부정적 認識을 지니고 있었으며, 實定 法的 존재를 마지못해 용인하는 태도를 보여왔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소비에트 國家體制의 확립과 강화, 사회주의 법의 강화 발전에 따라 도태당하기 마련이었다. 스탈린 시대의 法理論을 代辯한 비신스키는 소비에트법과 國家의 最大限의 강화를 역설했다. 그에 따라 1930년대 소련은 刑罰의 사멸이 아니라 극단적인 刑罰강화의 현상이 두드러졌던 것이다.

오늘날 主體思想 國家에서는 法과 國家의 고사설에 집착하지 않고, 法的 필요성과 중요성을 認定하는 경향이 지배적이며, 사회공학적 手段으로서의 法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法과 國家의 고사이론은 기껏해야 명목상으로 維持될 뿐이며, 그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장, 옹호되고 있지 않다. 한편 北韓의 경우에는 어느 시기에도 이러한 고사이론의 의미나 適用可能性을 진지하게 檢討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상세한 것은 한인섭(1986), 조국(1989) 참조.

맺 음 말

여태까지의 北韓刑法에 대한 접근방법과는 달리 이 글에서는 北韓社會의 내적 발전논리와 發展段階에 비추어 北韓刑法의 성격과 특성을 살펴보고자 했다. 北韓 저술에서는 北韓社會의 時期區分을 대략 植民地반봉건혁명단계, 社會主義의 전면적 건설단계, 社會主義 제도 확립단계, 社會主義의 승리단계로 設定하는 데, 이러한 단계에 따라 法の 역할과 위상이 달라짐은 물론이다. 그리하여 오늘날에는 北韓의 經驗을 보다 一般化하여 法の 발전단계를 (1)帝國主義的 및 封建的 예속을 없애기 위한 투쟁과 人民民主主義法의 단계, (2)人民大衆의 社會政治的 自主性を 실현하기 위한 투쟁과 社會主義法의 확립단계, (3)人民大衆의 自主性的 完전한 實現을 위한 투쟁과 社會主義法의 강화발전단계로 說明하고 있다.(심형일, 1987)

北韓의 기본적 法制는 北韓社會와 國家의 變化發展에 따라 改正되게 되었다. 法的으로 볼 때 北韓社會와 國家의 變化發展을 집약한 것은 1948년 憲法으로부터 1972년의 憲法으로서의 이행일 것이다. 전자는 人民民主主義法의 단계를, 후자는 社會主義法의 강화발전단계를 代表한다고 볼 수 있다. 사상적으로 볼 때는 전자에는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지도적 指針으로 하면서, 스탈린 憲法의 영향이 짙게 배여 있는 데 반해, 후자에는 北韓의 독특한 社會主義革命의 성과를 반영하고 있고 主體思想의 영향에 의해 채색되고 있다는 점에서 독특한 社會主義法으로서의 특색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憲法の 改正은 당연히 下位法의 改正을 초래했다. 48년 憲法에 뒤이어 50년 刑法이 만들어졌듯이, 72년의 憲法에 뒤이어 74년에는 刑法과 刑事訴訟法, 裁判所構成法 등의 대폭적인 改正이 있었다. 後者の 法律들에서는

역시 北韓의 社會發展의 經驗과 영향이 대폭 들어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본고에서는 74년 刑法의 원문을 입수하지 못한 채 쓰여진 까닭에 지극히 불완전한 論議를 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北韓의 刑事法制는 植民地法의 諸般遺産을 철저히 清算하는 데서부터 출발했다. 植民地法의 유산을 승계한 南韓의 刑事法制와는 달리, 처음부터 반제반봉건과 人民民主主義의 혁명을 내세웠던 北韓政權의 立場에서는 植民地法과의 타협은 생각할 수 없는 것이었다. 따라서 토지개혁과 친일파 숙청, 남녀평등권 確立, 國家形成作業의 수행과 같은 혁명적 조치는 어떤 실정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人民의 혁명적 法意識에 의거해서 施行될 수밖에 없었다.

1950년 北韓刑法은 이러한 구체적인 法的 실천의 成果를 집약하고 선진 소련의 刑事立法을 상당부분 參考하여 制定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이를 두고 스탈린 刑法의 모방일변도라고 하는 주장은 별 妥當性이 없다. 오히려 北韓의 法體驗과 법적 과제라는 내용을 소련刑法의 틀을 참조하여 제정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보다 정확할 것이라 생각된다.

北韓刑法의 主要한 특색은 社會的 위험성이란 기준으로 犯罪性을 決定한다는 점, 國家와 법질서의 방위를 최우선적인 과업으로 한다는 점, 刑罰의 目的으로 일반예방과 특별예방을 두루 망라한다고 規定하고 있다는 점, 전반적으로 構成要件이 포괄적이고 刑량이 엄중하다는 점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종래 北韓刑法에 대해 비난이 집중된 영역은 유추해석과 遡及效를 인정하고, 실질적 犯罪概念과 불확정개념을 남용함으로써 인정함으로써 近代刑法의 기본원리인 罪刑法定主義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종래의 비판중의 상당부분은 社會主義 刑法의 構造에 대한 오인에서 비롯되었거나, 北韓 刑法의 원리와 조문에 대한 물이해에서 비롯됨을 지

摘하고자 했다. 北韓刑法의 잔혹성과 罪刑法定主義의 위배 부분에 대한 비난은 西歐刑法學者의 입장에서는 당연하겠으나, 南韓의 경우와 비교할 때는 相對的으로 설득력이 줄어드는 감이 있다. 우리의 경우에 特別刑法의 制定을 통한 一般刑法의 보장적 기능의 무력화, 불확정개념의 남용, 정치적 변동기마다 등장하는 遡及刑法들, 死刑制度의 존치와 확대, 불법적인 형사적 慣行들의 남용과 같은 악폐를 감안할 때, 이를 방치한 채 남만 비난하는 것은 별로 권장할 만한 태도는 아닌 것 같다.

50년 刑法이 制定된 이래 北韓社會는 대단한 변모를 겪은 것이 사실이다. 무엇보다 北韓의 社會主義 건설에 대한 지도원리로서 主體思想이 體系化되고, 그 영향력이 사회 全部面에 확장되었고, 나아가 그것이 金日成主義로 화하는 사상적 궤적이 주목된다. 그리고 社會主義의 제도화를 과시하기 위해 기타 下位法令이 制定되었다. 적어도 70년대 이후의 法令에 대한 이해에는 北韓社會의 경제단계의 變化와 政治的·思想的 變化에 대한 이해를 불가피하게 한다.

50년 刑法에 대한 대폭적인 改正은 1974년에 이루어졌는데, 이 改正 사실과 그 具體的 내용을 알지 못함으로써 기존의 연구는 많은 결함을 드러낸 것이 사실이다. 그 原因이 자료에 대한 부족의 공급차단에 있든, 남쪽의 자료개방 노력의 부족에 있든 무엇보다 시급히 克服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된다. 앞으로 본격적으로 北韓刑法關係 자료를 입수하고, 개방적인 투신의 자세로 그에 대한 檢討가 이루어질 때 北韓法과 刑法에 대한 보다 진전된 인식과 평가가 내려질 수 있을 것이다. 필자로서는 빨리 그러한 시기가 닥쳐와 이 보잘것 없는 연구가 한낱 휴지조각이 되어 버리기를 기원할 따름이다.

참 고 자 료

<북한문헌>

- 김영철(1980),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밝혀주신 사회주의 법무생활에 관한 이론, 백과사전출판사.
- 리재도(1960), 공화국 재판법법의 발전. 평양:국립출판사.
- 사회과학출판사(1960), 주체의 사회주의 헌법리론.
- 서창섭(1984), 법건설 경험, 평양:사회과학출판사.
- 심현상(1957), 조선형법해설(총칙), 국립출판사.
- 심형일(1987), 주체의 법리론, 사회과학출판사.
- 통일문제연구소(1989), 북한경제자료집, 도서출판 민족통일.
- 한락규(1960), 공화국 형사입법의 발전, 평양:국립출판사.
- 홍극표(1983), 사회주의 법무생활을 강화하는 것은 혁명발전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 요구, 사회과학 제6호.

<연구문헌>

- 강구진(1975), 북한법의 연구, 박영사.
- 강진철(1989), 북한법 연구의 현황과 과제, 법과 사회이론연구회 편, 법과 사회, 창간호.
- 고성준(1988), '주체사상'의 '김일성주의'화에 관한 연구, 편집부편, 주체사상 연구, 도서출판 태백.
- 金圭昇(1985), 朝鮮人民民主主義人民共和國の 法と社會 日本評論社
- 金圭昇(1988), 朝鮮人民民主主義人民共和國の 刑事法制, 日本評論社

- 김일수(1988), 남북한 형사소송법의 비교연구, 북한법률행정논총,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소.
- 김준엽(1985), 북한형법에 관한 연구, 동국대 행정대학원 박사논문.
- 김철(1989), 러시아 소비에트법, 민음사.
- 노창희(1977), 북한형법에 대한 연구, 동국대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 도희근(1984), 사회주의 국가의 헌법질서에 관한 연구—소련헌법의 체계와 구조를 중심으로, 서울대 석사논문.
- 법무부(1985), 북한법 연구(Ⅱ): 형법, 법무자료 제65집.
- 박광섭(1988), 북한형법에 관한 고찰,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편, 북한의 법과 법이론.
- 박동희(1980), “북한형법—특히 인권침해규정을 중심으로—”, 고대 법률행정 연구소, 북한법률행정논총, 제4집.
- 박현선(1989),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혁명기의 여성정책”, 해방전후사의 인식 V, 한길사.
- 배종대(1988), “농일과 북한형법의 이해”, 북한법률행정논총,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소.
- 서대숙(1989), 북한의 지도자 김일성, 청계연구소.
- 염정철, “북한형법의 구조와 그 문제점”, 형법연구, 법전출판사, 1980.
- 정해구(1989), “북한의 혁명론과 실천과정”, 김남식 외편, 북한사회의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 현장문학사.
- 조국(1989), 소비에트 사회주의 법. 형법이론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 1917—1938, 서울대학교 법학석사학위논문.
- 최종고(1988), “북한의 법학과 법사상”,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편, 북한의 법과 법이론.
- 한인섭(1986), “소비에트 형법과 범죄학의 전개”, 한양대 중소연구, 10권

3호, 가을.

한인섭(1989), “권위주의적 지배구조와 법체제”, 계간 사상과 정책, 가을 호.

한홍구(1989), “알기쉬운 북한현대사”, 김남식 외편, 북한사회의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 현장문학사.

北韓形法の 形成과 展開에 關한 研究

1989년 12월 일 인쇄

1989년 12월 일 발행

발행처: 국토통일원 조사연구실(제 1 연구관실)

서울·종로구 세종로 77번지

정부종합청사 405호 ☎ 720-2141, 2425

간행책임: 보좌관 사 순 문

인쇄소: 서라벌인쇄주식회사

〈非 賣 品〉

